

[별지 제7호서식]

정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양쪽)

수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접수일자	2008. 1.15	접수번호	사회교육문화분과-1
------	------------	------	------------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위한 광우병 위험 견역 조건을 미국의 희망을 수용하여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따른 위험부위를 제거한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한 복지부·산하기관 보고, 민간전문가 자문내용

공개 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위에서는 정보공개청구 문건을 복지부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반거나 지문 받은 바 없으며, 관리하고 있는 정보도 아님

공개방법	공개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전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를 (기타)
	공개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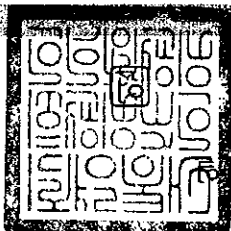
공개일시(기간)

수신표(A)	응수표(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로 년임계좌(임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운운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물지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2008년 1월

별조자

시행 문서번호 사교-02 (080121)

110-230/서울시 용포구 삼척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 http://www.17insu.or.kr

전화(02-724-9429) / 전송(02-2180-7269) / yoonsk2@ptc.go.kr /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료는 대동령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
3조에 의거 비공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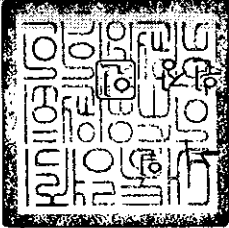
2. 결정사유

공개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료는 대동령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에서는 보건복지부 등으로
 부터 보고 자료 받은 바 없으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
 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공개할 수 없음은 안려
 드려나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 문·물·기록 그 외의 모든 정보라 함은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
 등을 교부하는 것임”

정보(□)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 백승현)

접수일자	2008.1.15.	접수번호	2008.1.15.
접수정보내용	인수위원회가 외교부, 보건복지부, 독립부 등으로 보고 또는 자문 받은 것으로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검역조건 개정과 관련하여 미국측 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한 문서와 검토방향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 등		
공개내용	독립부 업무보고 자료에 미국산 쇠고기 및 관련된 한미간 논의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동 자료는 인수위의 업무파악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이며,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 국익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음		
공개방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원상시정 ■ 사본물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부분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 우편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기타 ()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응수료(B)	수수료간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 면임(제외)(영문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은 국공기관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2008년 1월 15일			
대우증권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 012121 권문위원, 김희정, 김민정, 김민정	간사		
시 행 경 제 이 - 8 (2008. 1. 15)			
우110-230 / 주소 서울시 용포구 산청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 www.17insu.go.kr 전화(02-724-9401) / 전송(02-2180-7259) / 이메일 leejm12345@hanmail.net / 공개			

1. 결정근거

공개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르는 비공개 정보인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써 국가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의거 비공개할

- 독립부 업무보고 자르는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한·미간 국외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며, 목 자르는 인수위의 업무파악에 참고하기 위한 자르임.

2. 결정사유

공개청구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자르는 비공개 정보인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은 원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동지서

수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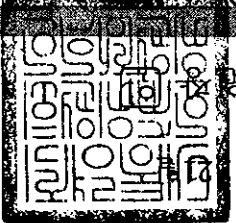
접수번호	2008. 1. 17(목)	접수번호	외교물인안보분파-1
------	----------------	------	------------

연구정보내용	한미 FTA 관련 외교물상부의 보고서
공개내용	
비공개내용 및 사유	별첨 참조

공개방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관출력을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인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포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일시(기간)	공개 장소
수수료 (A)	우송료 (B)
원	원
수수료 산정내역	수수료 면제(임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문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8년 1월 제17대 대외협력인수위원회

기안자(원무위원) - 78522 김민준
 검토자(전문위원) 이영진
 결재권자(간사위원) 김민준

시행 외교물인안보분파위-48 (2008.1.21)
 우-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 www.17insu.or.kr
 전화(724-9663) / 전송(2180-7229)

<참부>

결정근거

- 공개청구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물상부의 보고서는 인수위 외교물원안보
분과위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써 운용기관의정보에관한변를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비공개함.

결정사유

- 인수위 외교물원안보분과위는 외교물상부로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를
포함, 한미 FTA 관련 현황에 대해 구두 보고받은 바 있으나, 사안의
민감성등 감안, 보고 내용 등 서면으로 접수·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개
청구한 외교부의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음등 양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외 정의(운운기관외정보에관한법률제2조제1호) :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등 함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본을 교부하는 것임."